

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  
제296회 임시회

대구광역시달서구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원발의】  
검토보고서



2023. 4.

기획행정위원회 전문위원

# 대구광역시달서구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검토보고서

2023. 4. 20.

기획행정위원회

### 1. 검토과정

- 안건명: 대구광역시달서구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발의자: 권숙자 의원 등 6명(황국주, 최홍린, 박정환, 김장관, 박왕규)
- 발의일자: 2023. 4. 7.(금)
- 회부일자: 2023. 4. 7.(금)
- 검토기간: 2023. 4. 7.(금) ~ 4. 13.(목)

### 2. 제안이유

- 국민권익위원회의 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 개선권고(2022. 12. 19. 의결)를 반영하여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 제외 대상자를 4급 이상에서 관리자급인 5급 이상으로 확대 및 위원회 명칭과 대행근거 등을 정비하고,
- 「지방세징수법」 상 “결손처분” 용어가 “정리보류”로 변경됨에 따라 용어변경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
-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과 맞지 않는 조문을 정비하여 법적 안정성 확보와 입법의 통일성을 제고하고자 함

### 3. 주요내용

- 「지방세징수법」 용어 개정사항 반영(안 제2조제2항)
- 포상금 지급대상으로 보지 않는 사유 중 상위법령과 맞지 않는 조문 정비(안 제2조제3항)

- 지방세 징수포상금 지급 제외대상 확대(안 제2조제5항)
- 위원회 명칭 및 대행근거 정비(안 제7조)

## 4. 참고사항(관계법령 등)

- 관계법령 및 현행조례
  - 「지방세기본법」 제146조,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 제54조  
「지방세징수법」 제106조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8조
  - 「대구광역시달서구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 비용추계: 비대상
- 입법예고(2023. 4. 7. ~ 4. 17.)결과: 의견 없음

## 5. 검토의견

- 본 개정 조례안은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제외대상을 4급(국장) 이상에서 관리자에 해당하는 5급(과장) 이상으로 확대한 국민권익위원회 ‘부패영향평가 개선권고’(의결 2022. 12.) 사항 반영과 포상금지급심의 위원회 관련 규정 등을 정비하고
- 결손처분을 쉬운 용어로 변경하면서 성격이 다른 결손처분 사유를 구분하기 위하여 지방세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에는 시효완성정리를 하도록 하고, 그 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리보류를 할 수 있도록 한 「지방세징수법」 개정(시행 2022.1.28.)에 따라 ‘결손처분’ 용어를 ‘정리보류’로 개정사항을 반영하였으며,
-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에 맞도록 인용 조문 등을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 상위법령 범위 내 적법하게 작성되어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됨.
-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관 계 법령】

### □ 지방세기본법

제146조(포상금의 지급)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세조합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 할 수 있다. 이 경우 포상금은 1억원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17. 7. 26., 2020. 12. 29.>

1. ~ 3. 생략
  4.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체납액 징수에 기여한 자
  5. 생략
- ② ~ ⑨ 생략

### □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

제54조(체납액 징수에 기여한 자) ① 법 제146조제1항제4호에서 “행정안전 부령으로 정하는 체납액 징수에 기여한 자”란 지속적인 납부독려, 체납 처분 등 특별한 노력으로 체납액 징수에 기여한 자를 말한다. <개정 2017. 7. 26.>

-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특 별한 노력으로 체납액 징수에 기여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1. 단순히 독촉장, 납부최고서, 체납액 고지서를 발송한 후 체납자의 자진 납부에 따라 체납액이 징수되는 경우
  2. 과세물건에 대한 압류만으로 해당 과세물건에 대한 체납액이 징수된 경우
  3. 해당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체납자의 재산에 대하여 실시한 공매 또 는 경매 등에 참가하여 받은 배당금으로 체납액이 징수되는 경우

## □ 지방세징수법

제106조(정리보류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납세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정리보류를 할 수 있다.

1. 체납처분이 종결되고 체납액에 충당된 배분금액이 그 체납액보다 적을 때
  2. 체납처분을 중지하였을 때
  3. 삭제 <2022. 1. 28.>
  4. 체납자의 행방불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징수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
-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세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을 때에는 시효완성정리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22. 1. 28.>
-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정리보류를 한 후 압류할 수 있는 다른 재산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체납처분을 하여야 한다.

##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8조(법령 등에 대한 부패유발요인 검토)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따른 법령 등의 부패유발요인을 분석·검토하여 그 법령 등의 소관 기관의 장에게 그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권고할 수 있다.

1. 법률·대통령령·총리령 및 부령
  2. 법령의 위임에 따른 훈령·예규·고시 및 공고 등 행정규칙
  3.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규칙
  4. 생략
- ② 생략

\* 국민권익위원회 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 개선권고(의안번호 제2022-851호)

유형	문제점	개선방안
	9. 지방세 세입징수 포상금 무분별하게 지급	9. 지방세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제도 개선
인사 · 복무	① (생 략) ② 포상금 지급 제외대상을 4 급 이상으로 정해 관리자인 5급 과장 누락 ③ ~ ⑤ (생 략)	① (생 략) ② 공무원에 대한 포상금 지급 제외대상을 관리자급인 5급 이상(과장)으로 규정 ③ ~ ⑤ (생 략)

## 【 현행 조례 】

### □ 대구광역시달서구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세기본법」 제14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2조에서 조례로 위임한 사항과 대구광역시달서구 세입증대에 기여한 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급대상) ① 대구광역시 달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지방세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46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1. 대구광역시달서구 구세(이하 “구세”라 한다)를 탈루한 자에 대한 탈루세액 또는 부당하게 환급·감면받은 세액(이하 “탈루세액 등”이라 한다)을 산정하는데 중요한 자료를 제공한 자

2. 구세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신고한 자

3. 벼려지거나 숨은 세원을 찾아내어 부과하게 한 자

4. 지속적인 납부독려, 체납처분 등 특별한 노력으로 체납액 징수에 기여한 자

5. 지방세징수법 제18조에 따른 징수촉탁에 따라 세입증대에 기여한 자

6. 창의적인 제안이나 제도개선 등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준하는 사유로 포상금 지급심의위원회에서 지방세의 징수에 특별한 공적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

② 제1항제4호 중 “특별한 노력”이란 대구광역시 달서구(이하 “구”라 한다) 세입금을 체납한 자에 대하여 지속적인 납부독려, 체납처분, 자동차등록번호판 영치, 관허사업 제한, 체납 또는 결손처분 자료 제공,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 출국 금지 요청, 범칙행위 고발, 그 밖에 관련 법령에 따라 강제 징수하거나 이에 상응하는 특별한 공적이 인정되는 경우를 말한다.

③ 제1항제4호를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포상금 지급대상으로 보지 아니한다.

1. 단순히 독촉장 또는 납부최고서를 발송한 후 체납자의 자진 납부에 따라 체납액이 징수되는 경우

2. 체납자 재산에 대하여 과세권자 외의 권리자가 실시한 공매 또는 경매 등에 참가하여 받은 배당금으로 체납액이 징수되는 경우

④ 점용료·사용료 및 과태료 등 세외수입 증대에 기여한 경우에도 포상금을 지급

한다.

⑤ 제1항 및 제4항에도 불구하고 대구광역시달서구 4급 이상 공무원은 포상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한다.

**제3조(지급기준)** ① 구청장은 제2조에 해당하는 자에게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포상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1. 제2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지방세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82조제1항에 따른 금액
2. 제2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영 제82조제2항에 따른 금액
3. 제2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자로서 납세의무성립일로부터 1년 이상 경과한 구세 세원을 찾아 부과 징수한 경우 : 징수액의 100분의 5
4. 제2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금액
  - 가. 지난년도 체납액 중 1년차의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 : 징수액의 100분의 1
  - 나. 지난년도 체납액 중 2년차의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 : 징수액의 100분의 3
  - 다. 지난년도 체납액 중 3년차 이상의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 : 징수액의 100분의 5
5. 제2조제1항제5호에 의하여 징수촉탁으로 징수한 경우에는 구가 받은 징수촉탁 수수료의 100분의 10
6. 제2조제1항제6호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건당 10만원 이상 30만원 이하. 다만, 관계 규정에 따라 제안 등이 채택되어 부상금을 지급 받은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② 제2조제4항에 따라 점용료·사용료 및 과태료 등 세외수입 증대에 대한 포상금을 지급할 경우에는 제1항제3호, 제4호 및 제6호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4조(지급한도)** 제2조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포상금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초과하여 지급할 수 없다.

1. 건당 30만원
2. 개인별 월지급액 100만원

**제5조(자료제공 및 신고 등)** ① 제2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제보나 신고(이하 “신고 등”이라 한다)하는 경우에는 제보자나 신고자(이하 “신고자 등”이라 한다)의 개인정보 및 신고내용이 외부에 유출되지 않도록 보안유지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탈루세액 등의 제보는 별지 제1호서식, 체납자의 은닉재산의 신고

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문서로 하여야 하며, 이 경우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제1항의 신고 등에 대한 구체적인 증거자료가 제시되지 않는 등 불충분한 경우 신고자 등에게 보다 구체적인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신고자 등은 이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제6조(지급신청 통지 등)** ① 구청장은 제5조제1항에 따른 신고 등과 관련된 해당 세액의 징수가 완료되면 신고자 등이 포상금의 지급을 신청할 수 있도록 탈루세액 등 제보자에게는 별지 제3호서식, 체납자 은닉재산 신고자에게는 별지 제4호서식의 포상금지급신청서와 함께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② 신고자 등은 제1항에 따른 통지를 받으면 해당 서식을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제7조(포상금지급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① 세입징수포상금에 대한 공적 심의는 「대구광역시달서구 규정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서 한다. 다만, 위원 중 포상금 지급대상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위원은 회의에 참석할 수 없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포상금의 지급 대상 및 요건에 관한 사항
2. 포상금의 지급 기준에 관한 사항
3. 특별한 공적의 심사에 관한 사항
4. 포상금 지급 금액의 결정에 관한 사항
5. 그 밖의 포상금 지급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제8조(포상금 지급신청 등)** ① 포상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소관부서에 포상금 지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제6조제1항에 따른 포상금 지급신청 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통지받은 서식에 따라 신청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포상금 지급신청이 있는 경우 신청자의 공적 등을 확인하여 별지 제6호서식을 작성하고 관계서류를 붙여 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③ 위원장은 제7조에 의한 의결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서를 붙여 구청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제9조(포상금의 지급)** ① 구청장은 제8조에 의한 포상금 지급신청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포상금은 지급대상의 해당 징수액이 수납된 후에 지급한다. 다만, 제2조제1항제1호와 제3호에 따른 포상금은 관계법령 등에 따른 불복청구기간 또는 제소기간이

경과하였거나 불복청구 절차(행정소송 등에 의한 불복절차를 포함한다)가 종료되어 부과처분 등이 확정된 후에 지급한다.

③ 제1항에 따른 포상금을 지급할 경우 지급대상자의 개별예금계좌에 입금한다.

제10조(포상금의 환수) ① 구청장은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포상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즉시 환수하여야 한다.

② 포상금을 지급하였으나 해당 포상금의 지급원인이 된 징수액이 이중부과 등 행정착오에 의하여 환급된 경우에는 이를 즉시 환수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포상금을 환수하는 경우 포상금을 지급한 날부터 환수 결정하는 날까지의 기간 동안 영 제43조에 따른 이자율로 계산된 금액을 환수할 금액에 가산하여야 한다.

제11조(대장비치) 세입금 부과징수 부서는 별지 제7호서식부터 별지 제11호서식까지의 대장을 비치하고 필요한 사항을 기록·정리하여야 한다.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